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알림

1. 전세연 제2024-145호(2024.11.22.)와 관련입니다.

2. 현행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'24.12.04(수)까지 불임양식을 작성하여 조합팩스(02-418-0071)로 송부 부탁드립니다.

= 아 래 =

□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입법예고 주요내용

▶ 현 행 :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각각 운송계약 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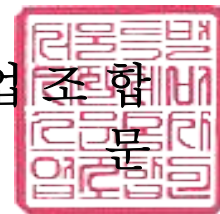
▶ 개 정(안) : 시·도 교육감(교육장)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

※ 불 임 : 1)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1부.

2) 의견제출 양식 1부. [끝]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이 사 장 오 성 문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(전결)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4-196호 (2024.11.25) 접수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)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